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132, 502호 (03133)
- 팩스 : 02-6280-3403
- 카페 : <http://cafe.daum.net/paspower/>
- 배포날짜 : 2026년 4월 26일

- 전화 : 070-7011-3403
- 이메일 : ndau.kr@gmail.com
-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ndau.kr/>
- 문의 : 고미숙 조직국장 010-2717-7019

노동자 처우하락 공범 정부와 민간위탁기관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는 ‘시급제’노동자의 유급휴일 차별없이 보장하고,
 노동자 동의없는 사용자의 휴일변경 철저히 감사하라”**

일시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10시50분
 장소 : 서울노동청 앞 (장교빌딩)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지원사노조(이하 지원사노조)는 2026년 노동절을 맞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하락 방지와 불법·편법 근로계약 관행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지원사)가 일요일, 관공서공휴일과 대체휴일, 노동절 등 휴일과 야간에 근무를 하면 장애인의 바우처는 150%가 차감됩니다. 이렇게 바우처 단가를 구분하여 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당연히 평일의 150%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요일에 근무를 해도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지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4. 정부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로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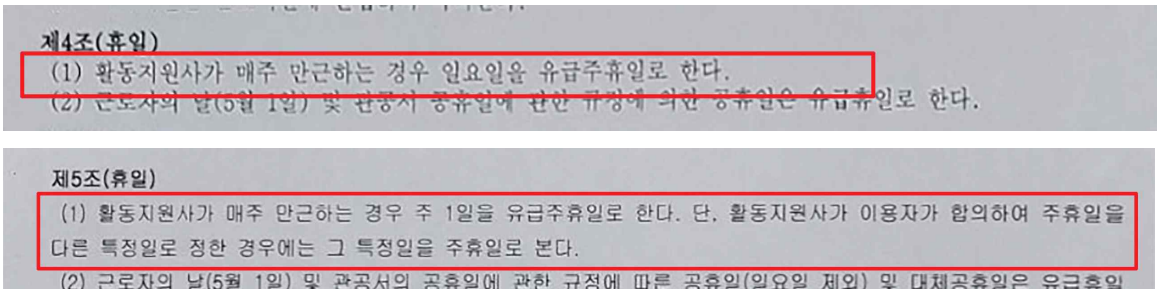
를 지급해 왔습니다. 아래 그림은 기획재정부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산출한 세부내역입니다. 표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에게 기존 약정계약으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급여의 150%를 지급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150%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인건비							순수 기관 운영비 (G)	서비스 단가 (I=F+G)
	직접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실질 인건비 소계 (F=C+D+E)			
	최저 사급 (A)	주휴·연 차수당 (B)	유급 휴일 수당 (C)	직접 인건비 소계 (C=A+B)	4대 보험 (D)		퇴직 충당금 (E)		
'19년	8,350	1,915	-	10,265	933	629	11,827	1,128	12,960
'20년	8,590	1,970	-	10,560	940	652	12,152	1,348	13,500
'21년	8,720 (+1.5%)	2,000 (+1.5%)	321 (+순중)	11,041 (78.8%)	968 (+3.0%)	656 (+1.5%)	12,665	1,363 (+1.2%)	14,020
15시간이상 (92%)	8,720	①2,174	②348	11,143	③1,052	④713	12,908	⑤1,363	14,270
15시간미만 (8%)	8,720	-	-	8,720	-	-	8,720	1,363	10,080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기존 약정계약으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지급중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단가표> 2021년, 강은미의원 제공

5. 아래 그림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일요일 가산수당을 미지급하고 추가이득을 챙긴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을 ‘일요일’에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심지어는 주휴일을 매주 임의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A기관의 근로계약서, 위는 2023년, 아래는 2025년>

6. 일요일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관이 취하는 일요일 수수료는 수가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지원사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정부가 바우처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위 A기관도 지원사가 일요일 가산수당 미지급에 항의하자

‘정부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려면, 정부가 노동자 몫으로 지급하는 것만이라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 2021년 지원사노조가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을 감독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을 때, 노동부는 ‘지원사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사의 소정근로일 문제를 방치한 결과가 지금은 주휴일의 임의변경, 지원사의 처우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 최근 활동지원사 B는 주휴일 임의변경으로 일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여 일요일 가산수당을 기관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부는 근무하지 않은 날에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지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해석으로는 ‘시급제 노동자는 월급제와 달라서’ 관공서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의 이런 만행은 처음도 아닙니다.
10. 2026년부터는 노동절에 공무원, 교사 등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원사는 시급제노동자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도 제한을 받습니다. 지원사노조는 주휴일을 임의변경하여 노동자 임금을 가로채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월급제와 시급제노동자의 차별없는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1. 귀 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